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인구수, 동명칭, 선거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대동제로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 통합 대상 현황

통합 전			통합 후				비 고
동 명칭	인구수	직원수	동 명칭	인구수	면적(km ²)	동사무소 위치	
영등포1동	15,926	11	영등포본동	26,584	1.0	현재 영등포1동	
신길2동	10,658	13					
영등포2동	5,676	11	영등포동	17,611	1.26	현재 영등포2동	
영등포3동	11,935	13					
도림1동	8,029	10	도림동	21,848	0.89	현재 도림2동	
도림2동	13,819	12					
문래1동	15,528	10	문래동	30,514	1.49	현재 문래1동	
문래2동	14,986	11					

※ 참고사항(따로붙임)

1.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2.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관련 자치구 진행상황
3. 동사무소 관할 인구수(통폐합 전·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5항 및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검토의견

- 우리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날 산업화 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 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동에서 4개동이 통합되어 18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29.

보고자 : 김 병 옥

1.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공원길23 (영등포동 592-70)		영등포동 중 영등포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길동 101번지 19호를 기점 으로 도신로에 연하는 신길동 221번지54호,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190번지47호에서 신길동 188번지 420호와 소방도로를 따라 신길동 35번지 이남지역
	영등포동	중마루길 28 (영등포동2가 222-2)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7가 영등포동8가	영등포동 중 경인로 이남지역 중 경부철도 이북지역으로 영등포동 414번지24호 소방도로 이동지역
	여의동	여의길 3 (여의도동 53-22)	여의도동	
	당산제1동	장수길 42 (당산동3가 250)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제2동	당산길 16 (당산동6가 305-4)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당산동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도림동	장미꽃길 50-1 (도림동 222-7)	도림동	
	문래동	문래역1길39 (문래동3가 55-16)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제1동	양남공원길14 (양평동1가 211-1)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중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남쪽지역 으로 양평동3가 69번지를 기점 으로하여 소방도로를 따라 남쪽 양평동3가 1번지1호를 종점으로 한 북서쪽 지역
	양평제2동	느티나무길8-1 (양평동4가 172-1)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양평동3가 지역 중 양평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길제1동	신동1길1-13 (신길동 465-2)		신길동100번지21호에서 도신로 신길동159번지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202번지240호, 144번지190호, 460번지3호를 연하는 이동지역과 경인로 이북지역 중 신길동 70 번지10호에서 신길동 1번지4호 북서지역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 포구	신길제6동	대방천길 94 (신길동 3741-11)		신길동 3514번지1호를 기점으로 신길로를 따라 시흥대로 만나는 지점에서 대방로를 따라 신길동 623번지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2772번지1호, 이북방향 으로 신길동 243번지 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제7동	매낙골길 7-4 (신길동 897-3)		신길동 중 영등포본동장, 신길 제1,3,4,5,6동장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대림제1동	공단로26 (대림동 899-2)		대림동 700번지1호를 기점으로 대림로에 연하는 대림동989번지 5호, 시흥대로를 연하는 대림동 948번지1호, 신길로에 연하는 대림동908번지13호부터 소방도로 대림동906번지108호지역
	대림제2동	대림복지관길 29 (대림동 705)		대림동 709번지를 기점으로 도림로에 연하는 대림동1053번지 12호, 도림천로를 연하는 대림동 994번지4호, 시흥대로를 연하는 대림동 990번지1호지역
	대림제3동	대림로 66 (대림동 740-4)		대림동 중 대림제1,2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2.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관련 자치구 진행상황

(’07. 7. 7 현재)

구 별	인 구 수	구의원수 (선거구수)	동 수	폐지 동사무소			비 고 (통폐합대상동)
				계	1단계	2단계	
계	10,191,029	419 (162)	518	100	97	3	200
종로구	167,253	11 (4)	19	4	4		8
중 구	131,111	9 (4)	15	1	1		2
용산구	232,233	13 (5)	20	4	4		8
성동구	335,697	15 (5)	20	3	3		6
광진구	374,807	14 (4)	16	2	2		4
동대문	380,550	18 (8)	26	4	4		8
중랑구	426,684	17 (7)	20	4	4		8
성북구	470,605	22 (8)	30	10	10		20
강북구	351,298	14 (4)	17	4	4		8
도봉구	378,999	14 (5)	15	1	1		2
노원구	619,509	22 (7)	24	5	3	2	10
은평구	467,653	18 (8)	20	4	4		10
서대문	349,241	16 (6)	21	6	6		13
마포구	390,945	18 (8)	20	-	-		
양천구	501,436	18 (8)	20	4	4		7
강서구	556,590	20 (8)	22	4	4		9
구로구	418,750	16 (6)	19	4	4		8
금천구	255,657	10 (4)	12	2	2		4
영등포	410,013	17 (7)	22	4	3	1	8
동작구	409,695	17 (7)	20	5	5		9
관악구	530,040	22 (8)	27	6	6		12
서초구	408,106	15 (5)	18	10	10		18
강남구	555,201	21 (8)	26	1	1		2
송파구	606,819	24 (10)	28	4	4		8
강동구	462,137	18 (8)	21	4	4		8

3. 동사무소 관할 인구수(통폐합 전·후)

(’07. 7. 7 현재)

구 분	인 구 수	동 수 전 (폐지 전)	폐지동수	동 수 후 (폐지 후)	1개동당 인구수 (폐지 전)	1개동당 인구수 (폐지 후)	증감율
계	10,191,029	518	100	418	19,674	24,380	24%
종로구	167,253	19	4	15	8,803	11,150	27%
중 구	131,111	15	1	14	8,741	9,365	7%
용산구	232,233	20	4	16	11,612	14,515	25%
성동구	335,697	20	3	17	16,785	19,747	18%
광진구	374,807	16	2	14	23,425	26,772	14%
동대문	380,550	26	4	22	14,637	17,298	18%
중랑구	426,684	20	4	16	21,334	26,668	25%
성북구	470,605	30	10	20	15,687	23,530	50%
강북구	351,298	17	4	13	20,665	27,023	31%
도봉구	378,999	15	1	14	25,267	27,071	7%
노원구	619,509	24	5	19	25,813	32,606	26%
은평구	467,653	20	4	16	23,383	29,228	25%
서대문	349,241	21	6	15	16,631	23,283	40%
마포구	390,945	20	0	20	19,547	19,547	0%
양천구	501,436	20	4	16	25,072	31,340	25%
강서구	556,590	22	4	18	25,300	30,922	22%
구로구	418,750	19	4	15	22,039	27,917	27%
금천구	255,657	12	2	10	21,305	25,566	20%
영등포	410,013	22	4	18	18,637	22,779	22%
동작구	409,695	20	5	15	20,485	27,313	33%
관악구	530,040	27	6	21	19,631	25,240	29%
서초구	408,106	18	10	8	22,673	51,013	125%
강남구	555,201	26	1	25	21,354	22,208	4%
송파구	606,819	28	4	24	21,672	25,284	17%
강동구	462,137	21	4	17	22,007	27,185	24%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1994.12.20, 1999.8.31, 2005.3.24>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0>